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의료법 개정(법률 제19421호, 2023. 5. 19. 공포, 2023. 11. 20. 시행)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(안 제32조의2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 하려는 경우,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(안 제32조의2제1항)
- 2) 교육 기관의 종류(안 제32조의2제1항 제1호~ 제3호)
- 3) 교육의 내용 및 이수에 필요한 시간(안 제32조의2제2항)
- 4)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(안 제32조의2제3항)
- 5)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보고(안 제32조의2제4항)
- 6) 교육 과목·내용·방법·시간·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(안 제32조의2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면허재교부 사전교육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고자 할 때는 면허재교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면허재교부 교육기관”이라 한다)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
2.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
3. 그 밖에 보건 또는 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1. 환자 권리의 이해
2.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
3.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
4.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.

④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,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·시간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면허재교부 사전교육의 적용례) 제32조의2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2조의2(면허재교부 사전교육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 부하고자 할 때는 면허재교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 체(이하 “면허재교부 교육기관” 이라 한다)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1. 「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」 제 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 원</u> <u>2.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각 의 료인 중앙회</u> <u>3. 그 밖에 보건 또는 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면허재교부 대 상자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 다.</u> <u>1. 환자 권리의 이해</u>

2.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

3.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

4.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.

④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,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면허재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·내용·방법·시간과 제3항에 따른 교육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06